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1. 6 선고 2018가단36485 판결 [부속물매수청구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변론 종결 2019. 9. 18

판결 선고 2019.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140,400원과 그 중 42,640,00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김천시 C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28.13㎡(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이후 이 사건 제1건물에 연결하여1층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30.42㎡와 1층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25.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가 신축되었다.

나. D은 2015 . 12. 22.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T?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제2건물을 주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갑 3호증의 1, 2, 3, 갑 4, 11,12, 13, 15호증,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증인 D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 사비로 42,640,400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는데,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이 사건 제2건물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에 부합됨으로써 피고가 그 공사대금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42,640,4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또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당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오수자분담금 6,500,000원을 원고가부담하였는바,피고는 원고에게 위 6,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은 제6회 변론기일에서 2019. 9. 16.자 준비서면 진술로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건물 중 'E : 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의 임차인인 D이 원고에게 공사하도록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2건물 신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공사대금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오수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6,500,000원 상당의 오수자분담금을 부담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그 정산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선영